

제2024-12호 2024년 2월 1일(목)	시  보 여수시	시 정 지 표 소통화합 열린도시 인재육성 산업도시 문화예술 복지도시 해양관광 휴양도시 기후변화 선도도시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홍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5 FAX) 659-5803

고 시

여수시 고시	제2024-40호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오림동 주상복합시설 건설공사에 따른 중로 2-6호선 확포장)	1
여수시 고시	제2024-49호	여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시립박물관 진입도로)	3

공 고

여수시 공고	제2024-401호	공인폐기·정정공고(여수시 공고 제2024-401호)	4
여수시 공고	제2024-406호	도로지정(변경) 공고(율촌면 산수리 617-12번지)	5
여수시 공고	제2024-409호	도로지정 공고(상암동 1172번지)	7
여수시 공고	제2024-412호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 공고	9
여수시 공고	제2024-415호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재공고(여수 신기주공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13
여수시 공고	제2024-418호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 시행 행정예고	39
여수시 공고	제2024-419호	「소라면 죽림행정복합시설 신축사업」 건축설계 공모 공고	43
여수시 공고	제2024-436호	보상계획 열람공고 「서교동 중앙교회-다락카페 소방도로 개설공사」	48

회 람									
--------	--	--	--	--	--	--	--	--	--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2. 1.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여수시 오림동 386-1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중로 2-6호선)

나. 명 칭: 주상복합시설 건설공사에 따른 중로 2-6호선 확.포장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가. 면 적: 345㎡

나. 규 모

구 분	결 정		금회 시행			비고
	폭원(m)	연장(m)	폭원(m)	연장(m)	면적(㎡)	
중로 2-6	15~18	195	3	112	345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광문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고옥상

나.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 111, 4동 302-4호(덕이동, 양우로테오메인타운)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예정년월일: 2024. 1.(실시계획인가일로 부터)

나. 준공예정년월일: 2025. 9.2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불임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새로 설치되는 도로시설은 관리청인 여수시로 무상귀속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동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아림동	386-10	대	254	87	광문개발 주식회사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111, 4동 303호	-	-	-	
2		386-12	도	7	4	광문개발 주식회사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111, 4동 303호	-	-	-	
3		386-8	도	3	3	여수시	여수시 시청로1 (학동)	-	-	-	
4		382-21	도	3	1	임재영	여수시 오림동385-2	-	-	-	
5		524-8	도	206	21	국토부	-	-	-	-	
6		382-16	대	159	21	광문개발 주식회사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111, 4동 303호	-	-	-	
7		382-37	대	336	44	광문개발 주식회사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111, 4동 303호	-	-	-	
8		382-9	대	810	31	광문개발 주식회사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111, 4동 303호	-	-	-	
9		382-38	대	198	23	광문개발 주식회사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111, 4동 303호	-	-	-	
10		382-25	대	405	15	광문개발 주식회사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111, 4동 303호	-	-	-	
11		382-26	대	173	43	광문개발 주식회사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111, 4동 303호	-	-	-	
12		382-40	대	359	12	광문개발 주식회사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111, 4동 303호	-	-	-	
13		382-19	도	12	10	서부만	여수시 오림동382-5	-	-	-	
14		524-4	도	228	26	국토부	-	-	-	-	
15		380-5	도	13	4	정중호	여수시 봉산동249-31	-	-	-	
계	15 필지			345							

지장물조서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위치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오림동	382-5	옹벽+담장	콘크리트조적	2.3㎡	김동건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7길 9	-	-

여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여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2. 1.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 위치(변경없음) : 여수시 웅천동 1865-1번지 일원
2. 사업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 웅천공원)사업
 - 나. 명 칭 : 여수시립박물관 진입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 가. 면 적 : A=4,977㎡
 - 나. 규 모 : L=487m, B=4.5 ~ 11.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가. 성 명 : 여수시장
 - 나. 주 소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5.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2021.11.11.~2023.12.31.**
변경: 2021.11.11.~2025. 1.27.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토지조서(변경없음)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여수시 웅천동	1865-1	공	335,644	4,977		여수시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해당없음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3) 및 문화유산과(061-659-45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공고 제2024-401호

공인(폐기·정정)공고

여수시 공인 조례 제7조, 제15조에 의거 공인 폐기·정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 30.

여 수 시 장

□ 공인 폐기 정정 내역

1. 정정 사유

- 2021. 3. 30. 폐기 공고(여수시 공고 제2021-930호) 당시 반납 착오로 인해 폐기 대상 공인을 보유하고 있다가 2024. 1. 29. 반납 및 폐기 신청함
- 안전총괄과 - 2205(2024. 1. 29.) 사고보고서 접수 [보고자 : 최민혜]

2. 정정 내역

구분	공 인 명 (관리번호)	폐기인영	관리부서 (보고자)	폐기일	비고
당초	여수시방위협의회의장인 (17)		재난안전과 (이주나)	'21. 3. 30.	'98년 이전 제작 공인 반납 및 폐기 착오
정정			안전총괄과 (최민혜)	'24. 1. 29.	폐기인영 정정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읍촌면 산수리 617-12번지 상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2024. 1.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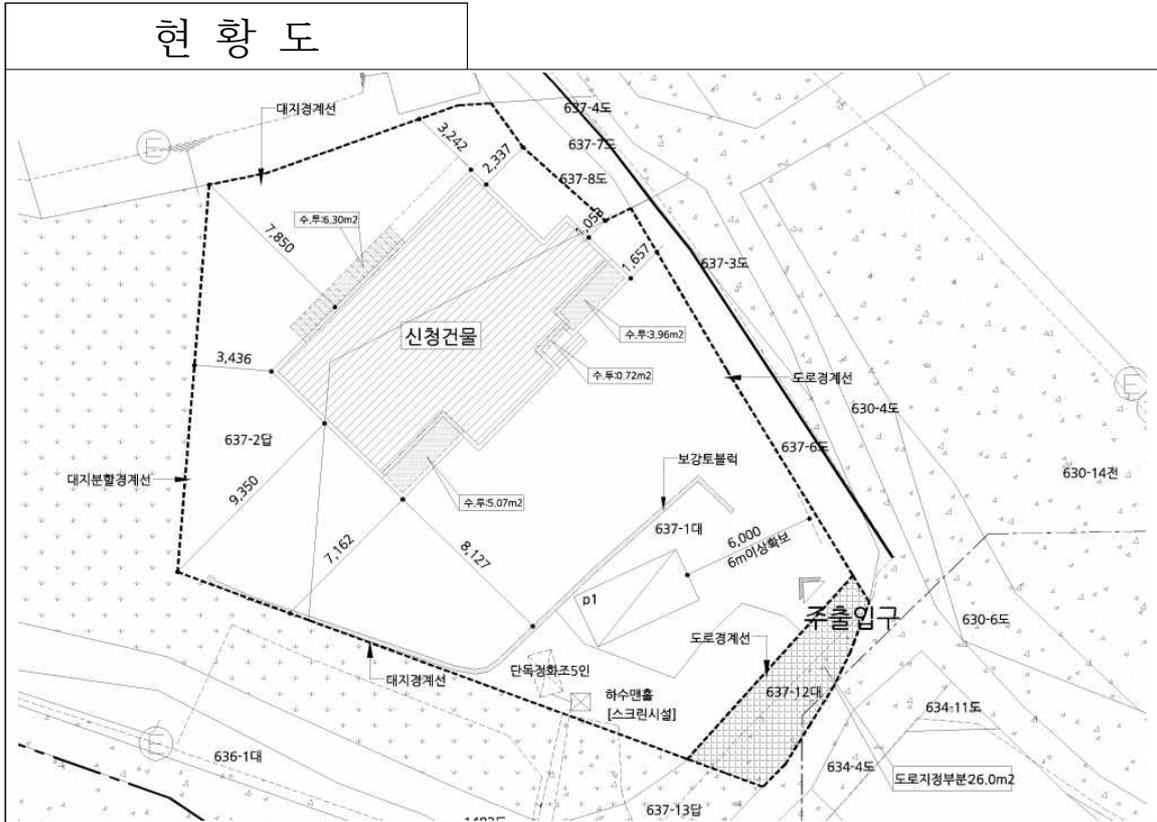
여 수 시 장

1. 위 치 : 읍촌면 산수리 617-12번지
2. 도로면적 : 26㎡
3. 도로길이 : 13m
4. 도 로 폭 : 4m
5.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

				()		
					9	
					8	
		8		9	9	
		8		8	8	

6. 관련도서 : 별첨참조

[별첨]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상암동 1173번지 상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1. 위 치 : 여수시 상암동 1173-2번지
2. 도로면적 : 63㎡
3. 도로길이 : 현황도 참조
4. 도로 폭 : 현황도 참조
5.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비 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계			63	63	
1	상암동	1173-2	도	63	63	

6. 관련도서 : 별첨참조

2024. 1. .

여 수 시 장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 공고

「농어촌정비법」 제55조, 제67조, 제108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1일

여수시장

1. 접수기간 : 2024. 2. 1. ~ 2024. 2. 29.
2. 접수장소 : 읍·면사무소(방문 접수)
3. 구비서류 :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 기존주택 및 신축예정지 사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세과세증명서(사업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모두)
4. 지원 대상
 - 가. 대상지역 : 농어촌지역*, 준농어촌지역(도시지역 중 농업진흥구역)
*농어촌지역 : 읍·면 전지역,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동 지역 중 상업지역·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나.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준농어촌지역을 포함)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 자
 -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려는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세대주 또는 배

우자

-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융자금(잔금)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융자금대출 신청일 전까지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 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입주예정자가 분양받은 조성용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가능
-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RAISE)에 등록되어 있는 농촌 빈집을 개량

4. 지원 기준

가. 사업규모 : 35동

나. 사업범위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다. 대상주택 : 연면적 150㎡이하 주택

- 단독주택(부속건축물 포함)의 신축(개축,재축 포함), 증축, 대수선
- 사업대상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은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증축의 경우 동일 부지(건축행정으로 신청한 필지) 내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150㎡를 초과할 수 없음

5. 세금 및 수수료 감면

○ 감면금액 : 최대 280만원 가능

- 취득세액 280만원 이하 : 전액 면제
- 취득세액 280만원 초과 : 280만원 공제

6. 용자조건

가. 대출한도

- 신축(개축, 재축 포함) : 최대 2.5억원
- 증축대수선 : 최대 1.5억원
- 대출금액은 시·군·구가 확인한 ‘사업실적확인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나.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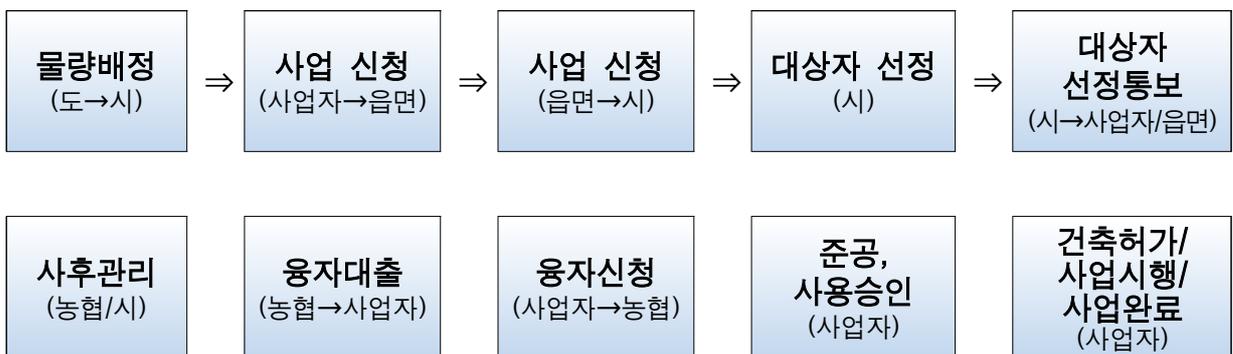
다. 상환조건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 사업대상자가 청년(만 40세 미만, ‘84년 1월 이후 출생자)일 경우 고정금리 1.5%적용
- 대출만기 전 중도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7.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 사업대상자가 사업실적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업실적(주택건축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증빙서류 검토 등을 거쳐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

8. 지원 절차



9. 기타 유의사항

- 가. 철거예정 건축물에 담보 설정, 보존 필요, 민·형사상 분쟁중인 건축물 등의 사유가 있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 나.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제출서류 등을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대상자 결정을 취소
- 다. 접수하신 서류는 반환, 수정, 보완 등이 불가하므로 유념하여 작성
- 라. 개량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신청이 불가(재산세 과세자료, 건축물 등기부등본 등 확인)
 - *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 상에 기재된 세대원을 말하며,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와 그 세대원도 포함
- 마.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주택 건축 신고 및 인·허가 등 건축행위 추진
 - * 농촌주택개량사업대상자 선정이 건축 신고·허가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바. 기타 안내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 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 건축과(659-402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달라진 점 >

- 신청시점 : 착공신고를 했더라도 실제 건축 착공 전까지 사업신청 가능
- 용자금액 : 신축 2억원→ 2.5억원, 증축 대수선 1억원→ 1.5억원 한도
- 대상규모 : 증축의 경우 동일 부지(건축행정으로 신청한 필지) 내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용자시점 : 1주택자의 경우 잔금대출전까지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기존주택을 철거하지 않더라도 선금(중도금) 대출 가능
-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삭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추진하니 사업신청자께서는 꼭 읽어 보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재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 수정사항

- 공고문 내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나.책임기술자(5)업무중첩도, 다.참여기술자(2)경력 평가점수 오류수정
- 붙임1. 여수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평가점수"에 따름
- 낙찰하한률 오류수정(87.745%→**86.745%**)
- 응모자격에 "비평가 기술자에 토목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실격 처리함." 조건 부여

2024. 1. 31.

여 수 시 장

1. 공고기간 : 2024. 1. 31.(수) ~ 2024. 2. 2.(금)

2. 사업내역

사 업 내 역
<p>가. 사 업 명 : 여수시 신기주공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p> <p>나. 사업주체 : 여수시 쌍봉로 188 [☎ 061)684-8280] 신기주공지역주택조합 대표 김민곤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34 [☎ 02)2011-7763] 디엘이앤씨 주식회사 대표 마창민</p> <p>다. 설 계 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02 화천빌딩 3층 지엔아이종합건축사사무소(주) 대표 한현호</p> <p>라. 시 공 자 :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34 디엘이앤씨 주식회사 대표 마창민</p> <p>마. 사업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전남 여수시 신기동 3번지 외 32필지 ○ 대지면적 : 32,824.80㎡ ○ 연 면 적 : 230,880.36㎡ ○ 규 모 : 아파트 15개동 (지하4층 / 지상 28층) 및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등) ○ 세 대 수 : 1,365세대 ○ 공사기간 : 2024.02.01 ~ 2027.02.28. (37개월) ○ 사업승인일 : 2022.05.26. <p>바. 안전점검비용 : 296,314,535원(건축물 정기안전점검 비용, 부가가치세 미포함)</p> <p>※ 기 초 금 액 : 287,425,000원 (안전점검비용의 97% 적용, 천원미만 절사, 부가가치세 미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수예비가격 : 조달청(G2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점검비용의 97±3% 범위 내에서 15개의 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간 내에서 무작위로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 (입찰참가업체)예비가격번호 2개 추첨(비공개) ▶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순으로 재배열하여 개찰집행 후 예정가격 산출 ○ 예정가격 산출(전자입찰방식) :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출평균금액

3. 안전점검 수행 예정표

가. 점검종류

항 목		단위	횟수	비 고
정기 점검	건축물	회	3	※ 일정 및 횟수, 점검비용과 관련하여 시공사와 협의 ※ 타워크레인은 9대 설치,해체 및 각 호기 인상 횟수
	옹벽	회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회	2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회	2	
	천공기(높이 10미터 이상)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회	2	
	항타, 항발기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회	2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회	60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회	2	
	높이 5미터 이상 거푸집, 동바리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회	2	
	높이 2미터 이상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는 건설공사	회	2	
	현장 조립복합 가설구조물(합벽지지대)	회	2	
초기 점검	건축물 및 옹벽	회	2	
계			83	

나.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준수하여 실시하고 점검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일 시 : [2024.02.05.\(월\) 10:00 ~ 2024.02.07.\(수\) 12:00](#)

나. 방 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시 제출서류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 및 심사표, 수행능력평가 참여 서약서](#)

라. 유의사항

- 1) 전자입찰서 제출 시 11.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류 미 제출자는 실격처리 함.
- 2) 안전진단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 누락 및 미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임.

- 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4)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같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약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7)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8)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 9)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신규등록업체 입찰참가자격 등록방법은 별첨한 안내문<참고자료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개찰일시

가. 개찰일시 : [2024.02.07.\(수\) 14:00 이후](#)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 1)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 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예비 순위가 확정됩니다.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률 적용순위이며 낙찰하한률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에 종합평점 95점이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함.

6. 사실확인 서류 제출 기간 및 장소 (예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가. 기 간 : [2024.02.08.\(목\) 09:00 ~ 2024.02.14.\(수\) 18: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여수시청 허가과(여수시 시청로 1, 1층)

-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함.
- 2)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별도 제출하기 바람.(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 3)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함.

7. 열람 · 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4.02.15.\(목\) 09:00 ~ 2024.02.19.\(월\) 12: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여수시청 허가과(여수시 시청로 1, 1층)

다. 다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항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 2) 자기평가서 : 평점 및 평점산정근거 기재
- 3) 참여기술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하며, 이의제기 시 법적근거를 명시하여 제출할 것.(미명기 제출 시 대상 제외)

라. 열람방법 : 여수시청 허가과 방문열람을 원칙으로 함(사진 촬영 불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신청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함

마. 이의신청방법: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상기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이의신청과 관련된 방문·전화 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 1)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기술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2)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할 것(전자문서 가능)
- 3)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행정제재 처리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8. 응모자격 및 평가기준

가. 응모자격 : 여수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여수시 공고 제2023-2425호, 2023. 8. 22.]에 등록된 업체

※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2022. 6. 29.)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함.

※ **비평가 기술자에 토목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실격처리함.**

나. 심사기준 : 참여업체 및 기술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적용 시점은 당해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다. 평가기준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붙임. 별표2]

※ **낙찰하한율(86.745%)** 미달은 평가대상 제외

9.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입찰서제출(신청서포함) ⇒ 개찰 ⇒ 우선순위(예비 1~3순위)선정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 ※ 예비 1~3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 서류를 세부평가 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 1) 「여수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 2)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름.
 - ※ 95점 이상인자가 없는 경우에는 종합평점 95점에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
- 4)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서 제외되고 1순위 업체부터 세부서류 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함.
- 5)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 6)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됨.
 -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 7) 제출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며, 제출업체가 없을 경우 여수시 건축 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순서로 지정함.

10. 재정상태 평가

-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 등급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

11.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2)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1호 서식]
- 3)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별지 제2-2호 서식]
- 4) 서약서(서식6)(인감날인)
- 5) 안전점검비 입찰서[별지 제3호 서식]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나. 사실 확인 제출 서류(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별지 제2-1호]서식 자기평가서의 평가항목에 대한 사실확인서류 일체를 『여수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 1)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1호 서식]
- 2)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별지 제2-2호 서식]
- 3) 재정상태 건실도 :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제출
- 4)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 확인서[서식 1]
- 5)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확인서[서식 2]
- 6) 유사용역 수행실적[서식3] 및 증빙서류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축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발급한 증명서류 및 발주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시행처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7) 업무중첩도[서식4] 및 증빙서류
- 8) 기술개발실적 및 기술개발투자실적 증빙자료
 - 특허증, 특허등록원부, 등록특허공보 및 재무검토 보고서 또는 투자실적 증명서류(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 9) 참여기술자 등급 및 경력 요약 [서식5]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 교육이수확인서 :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확인서 등
 - 업무중첩도 및 증빙서류
- 10) 기타 증빙자료
 -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접수시)

※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하단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순서에 부합되게 견출지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람.(평가항목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도 해당사항 없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

다. 유의사항

- 1) 상기 구비서류 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발행하는 경력확인서 또는 행정처분확인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2) 사실 확인 서류 제출 시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자격증사본, 교육 이수확인서사본,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기술개발실적 사본 및 투자실적증명원 등을 제외한 제출서류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3) 상기"가"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처리 함
- 4) 상기"가"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및 "나"사실확인 제출서류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 (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등
- 5)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하단 여백에 신청자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함.

12. 기타 유의사항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예정가격 추첨,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 1) 여수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되지 않거나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각 현장별 1회만 인정)이 없는 업체의 입찰
- 2)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3)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 4)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 나.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상의 내용과 증빙자료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업체인 1순위~3순위까지 우리시에 보관하고, 그 외 서류는 예정가격 추첨 후 폐기하오니, 신청자는 개별 회사서류 관리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않음.
-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바.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해당 일을 기준으로 점검비용을 정산합니다.
- 아. 응모서류(신청서 제출시 접수서류)는 총괄표 상의 자기평가점수만 확인하고 서류 검토 및 평가는 하지 않으며, 세부평가는 개찰결과 상위 3개업체에 대하여만 실시합니다.
- 자.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기준에 따릅니다.
- 차.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수정불가)
- 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타. 공고문 상의 안전점검 비용은 건축물(2종시설물) 및 옹벽의 정기·초기안전점검, 가설 구조물 등 정기안전점검 비용으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관련기준을 고려하여 추가되는 안전점검 비용은 시공사와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대하여는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나라장터 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입찰 당일 까지도 홈페이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허가과(☎061-659-40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여수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1부.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 1부.
3. 예정공정표 1부. 끝.

(표지 양식)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

(공사명 : 여수 신기주공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2024년 월 일

(회사명 기재)

자 기 평 가 서

구분	평 가 항 목		점수 기준	평점		평점 산정 근거 (해당 사항만 기재)
				신청자	지정 권자	
참여 업체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5			예)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B-
		점검 진단 평가결과	4			예) 시정처분(건), 부실처분(건)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3			예) 입찰참가제한(월), 영업정지(월)
	수행실적	실적(건수)	15			예) 정기안전점검(건)
		실적(금액)	15			예) 정기안전점검(억원)
	업무중첩도		5			예) 0개소(00신축공사)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실적	1			예) 특허 0건
		투자실적	2			예) 00(%)
	계		50			
	책임 기술자	자격		6		
경력		7			예) 00(년)	
실적		12			예) 정기안전점검(건)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3			예) 기술자격정지(월), 업무정지(월)	
업무중첩도		2			예) 0개소(00신축공사)	
계		30				
참여 기술자	자격		6			예) 고급건설기술자
	경력		6			예) 00(년)
	실적		5			예) 정기안전점검(건)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3			예) 기술자격정지(월), 업무정지(월)
	계		20			
총 계			100			

상기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수행기관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 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가. 참여업체	50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평가																
(1) 신용도	12																	
(가) 재정상태 건설도	5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head> <tr> <th>점수</th> <th>회사채</th> <th>기업어음</th> <th>기업신용</th> </tr> </thead> <tbody> <tr> <td>5.0</td> <td>BBB- 이상</td> <td>A3- 이상</td> <td>BBB- 이상</td> </tr> <tr> <td>4.0</td> <td>BBB- 미만 B- 이상</td> <td>A3- 미만 B- 이상</td> <td>BBB- 미만 B- 이상</td> </tr> <tr> <td>3.0</td> <td>CCC+ 이하</td> <td>C 이하</td> <td>CCC+ 이하</td> </tr> </tbody> </table> <p style="font-size: small; margin-top: 5px;">*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p>	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5.0	BBB- 이상	A3- 이상	BBB- 이상	4.0	BBB- 미만 B- 이상	A3- 미만 B- 이상	BBB- 미만 B- 이상	3.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5.0	BBB- 이상	A3- 이상	BBB- 이상															
4.0	BBB- 미만 B- 이상	A3- 미만 B- 이상	BBB- 미만 B- 이상															
3.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산출근거		평가점수 : 점																
(나) 점검·진단 평가결과	4	- PQ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용역에 대하여 건당 시정 처분은 0.3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산출근거		평가점수 : 점																
(다)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3	- PQ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																
산출근거		평가점수 : 점																
(2) 수행실적	30																	
(가) 실적(건수)	15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수행실적(건수)을 환산하여 평가 <p style="font-size: small; margin-top: 5px;">. 산정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포함) 건수 × 1.0 2)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제외) 건수 × 0.8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ext-align: center;"> <thead> <tr> <th>10건이상</th> <th>10건미만 8건이상</th> <th>8건미만 6건이상</th> <th>6건미만 4건이상</th> <th>4건미만</th> </tr> </thead> <tbody> <tr> <td>15.0</td> <td>14.3</td> <td>13.6</td> <td>12.9</td> <td>12.2</td> </tr> </tbody> </table> <p style="font-size: small; margin-top: 5px;">* 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기준 *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실적은 관련법령에 규정된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1건으로 산정 * 아파트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용역의 경우 상기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건수에 1.5배를 적용</p>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15.0	14.3	13.6	12.9	12.2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15.0	14.3	13.6	12.9	12.2														
산출근거		평가점수 : 점																
(나) 실적(금액)	15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수행실적(금액)을 환산하여 평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포함) 금액 × 1.0 2)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제외) 금액 × 0.8 																

		<table border="1"> <tr> <td>5억 원이상</td> <td>5억 원미만 4억 원이상</td> <td>4억 원미만 3억 원이상</td> <td>3억 원미만 2억 원이상</td> <td>2억 원미만</td> </tr> <tr> <td>15.0</td> <td>14.3</td> <td>13.6</td> <td>12.9</td> <td>12.2</td> </tr> </table> <p>* 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기준 예) 최근 5년간 실적계산 방법(이하 실적계산 방식 동일) ① 안전점검이 준공된 경우 2015.9.1. 모집공고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4년(2009.1.1. 공사착공, 2012.12.31. 준공)인 30억원 주택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수행한 경우에는 2010.9.1.부터 2012.12.31.까지 금액계상[2010.9.1.부터 2012.12.31.까지의 해당되는 안전점검비] * 준공실적(원)=30억(원)×{[(122일+(2년×365일))÷(4년×365일)] ② 안전점검을 수행중인 경우 2015.9.1. 모집공고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7년(2011.1.1. 공사착공, 준공예정일 2017.12.31)인 30억원 주택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수행중인 경우에는 2011.1.1.부터 2015.8.31.까지 금액계상[2011.1.1.부터 2015. 8.3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안전점검비] * 수행실적(원)=30억(원)×{[(4년×365일)+243일]÷(7년×365일)] *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실적은 관련법령에 규정된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1건으로 산정 * 아파트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용역의 경우 상기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1.5배를 적용</p>	5억 원이상	5억 원미만 4억 원이상	4억 원미만 3억 원이상	3억 원미만 2억 원이상	2억 원미만	15.0	14.3	13.6	12.9	12.2			
5억 원이상	5억 원미만 4억 원이상	4억 원미만 3억 원이상	3억 원미만 2억 원이상	2억 원미만											
15.0	14.3	13.6	12.9	12.2											
산출근거		- 금액 : 억원	평가점수 : 점												
(3) 업무중첩도	5	- 공고일 기준 현재 수행중인 다른 용역의 건수에 따라 평가													
		<table border="1"> <tr> <td>1개소 이하</td> <td>2개소</td> <td>3개소</td> <td>4개소 이상</td> </tr> <tr> <td>5.0</td> <td>4.0</td> <td>3.0</td> <td>2.0</td> </tr> </table>	1개소 이하	2개소	3개소	4개소 이상	5.0	4.0	3.0	2.0					
1개소 이하	2개소	3개소	4개소 이상												
5.0	4.0	3.0	2.0												
		* 수행중인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은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됨													
산출근거		- 개소 :	평가점수 : 점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3														
(가) 기술개발 실적	1	-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산출기준 : (건설신기술 건수×0.5)+(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건수×0.3)+(건설기술에 대한 실용신안×0.15)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5년미만</td> <td>5년이상 10년미만</td> <td>10년이상 20년미만</td> </tr> <tr> <td>특허</td> <td>100%</td> <td>80%</td> <td>60%</td> </tr> <tr> <td>실용신안</td> <td>100%</td> <td>80%</td> <td>-</td> </tr> </table>	구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구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산출근거			평가점수 : 점												
(나) 투자실적	2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 합계 /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따라 평가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0.5%이상	0.5%미만										
		2.0	1.8	1.6	1.4	1.2										
산출근거						평가점수 : 점										
나. 책임기술자	30	책임기술자 1인을 대상으로 평가														
(1) 자격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미달시 실격) - 상기조건을 만족하는 자중에 자격요건에 따라 평가점수 부여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건축구조기술사</td> <td colspan="4">기타 자격없음</td> </tr> <tr> <td>6.0</td> <td colspan="4">4.5</td> </tr> </table>					건축구조기술사	기타 자격없음				6.0	4.5			
건축구조기술사	기타 자격없음															
6.0	4.5															
산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급 : - 교육이수내용 : - 자격내용 : 				평가점수 : 점										
(2) 경력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에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한 경력기간을 합산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 포함) 이상의 용역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10년이상</td> <td>10년미만 9년이상</td> <td>9년미만 8년이상</td> <td>8년미만 7년이상</td> <td>7년미만</td> </tr> <tr> <td>7.0</td> <td>6.5</td> <td>6.0</td> <td>5.5</td> <td>5.0</td> </tr> </table>					10년이상	10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7.0	6.5	6.0	5.5	5.0
10년이상	10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7.0	6.5	6.0	5.5	5.0												
산출근거		- 경력 :				평가점수 : 점										
(3) 실적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수행실적을 환산하여 평가 - 산정방법 1)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포함) 건수 × 1.0 2)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제외) 건수 × 0.8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10건이상</td> <td>10건미만 8건이상</td> <td>8건미만 6건이상</td> <td>6건미만 4건이상</td> <td>4건미만</td> </tr> <tr> <td>12.0</td> <td>11.4</td> <td>10.8</td> <td>10.2</td> <td>9.6</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기준 *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실적은 관련법령에 규정된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1건으로 산정 * 아파트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용역의 경우 상기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건수에 1.5배를 적용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12.0	11.4	10.8	10.2	9.6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12.0	11.4	10.8	10.2	9.6												
산출근거		- 건수 : 건				평가점수 : 점										
(4)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Q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 														
산출근거		-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등 : (월)				평가점수 : 점										

(5) 업무중첩도	2	- 공고일 기준 현재 수행중인 다른 용역의 건수에 따라 평가 <table border="1" data-bbox="480 219 1394 286"> <tr> <td>1개소 이하</td> <td>2개소</td> <td>3개소</td> <td>4개소 이상</td> </tr> <tr> <td>2.0</td> <td>1.5</td> <td>1.0</td> <td>0.5</td> </tr> </table> * 공고일 현재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됨	1개소 이하	2개소	3개소	4개소 이상	2.0	1.5	1.0	0.5		
1개소 이하	2개소	3개소	4개소 이상									
2.0	1.5	1.0	0.5									
산출근거		- 건수 : 건 평가점수 : 점										
다. 참여기술자	20	참여기술자 1인을 대상으로 평가										
(1) 자격	6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table border="1" data-bbox="480 656 1394 741"> <tr> <td>고급 이상</td> <td>중급</td> <td>초급</td> </tr> <tr> <td>6.0</td> <td>5.0</td> <td>4.0</td> </tr> </table>	고급 이상	중급	초급	6.0	5.0	4.0				
고급 이상	중급	초급										
6.0	5.0	4.0										
산출근거		- 등급 : - 교육이수내용 : 평가점수 : 점										
(2) 경력	6	- 다음에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한 경력기간을 합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 포함) 이상의 용역 <table border="1" data-bbox="480 1070 1305 1189"> <tr> <td>7년이상</td> <td>7년미만 6년이상</td> <td>6년미만 5년이상</td> <td>5년미만 4년이상</td> <td>4년미만</td> </tr> <tr> <td>6.0</td> <td>5.5</td> <td>5.0</td> <td>4.5</td> <td>4.0</td> </tr> </table>	7년이상	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6.0	5.5	5.0	4.5	4.0
7년이상	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6.0	5.5	5.0	4.5	4.0								
산출근거		- 경력 : 평가점수 : 점										
(3) 실적	5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수행실적을 환산하여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정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포함) 건수 × 1.0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제외) 건수 × 0.8 <table border="1" data-bbox="467 1491 1385 1615"> <tr> <td>10건이상</td> <td>10건미만 8건이상</td> <td>8건미만 6건이상</td> <td>6건미만 4건이상</td> <td>4건미만</td> </tr> <tr> <td>5.0</td> <td>4.7</td> <td>4.4</td> <td>4.1</td> <td>3.8</td> </tr> </table> * 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기준 *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실적은 관련법령에 규정된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1건으로 산정 * 아파트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용역의 경우 상기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건수에 1.5배를 적용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5.0	4.7	4.4	4.1	3.8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5.0	4.7	4.4	4.1	3.8								
산출근거		- 건수 : 건 평가점수 : 점										
(4)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3	- PQ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										
산출근거		-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등 : (월) 평가점수 : 점										

안전점검비 입찰서

입찰내용	건 명 (공고번호)				
	금 액	금	원정(₩)	※ VAT 미포함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 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본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비 입찰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서 성실히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정권자 귀하

[서식1]

점검·진단 평가결과

()					

※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서식2]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최근 3년)

가. 입찰참가 제한

※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나.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자격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업무정지[]		

※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서식5]

참여기술자 등급 및 경력 요약

			()					

전자입찰참가 안내서

전자입찰 접속 방법

-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좌측) ⇒ 입찰공고(상단)
→ 물품, 공사, 용역 중 해당분야 클릭

▲ 공고현황 조회

○ 검색방법

- 입찰공고는 2개월간, 입찰(개찰일)은 3개월간을 기준으로 되어 있으므로 검색(가운데 하단)을 눌러 조회
- 기관별 검색 (찾기로 조건 검색 가능)
 - 발주(공고)기관 : 수요기관으로부터 입찰의뢰 받아 집행하는 기관
 - 실수요기관 : 입찰을 의뢰하는 기관
- ※ 기관 유사어를 넣고 검색하면 조회됨
- 공고명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공고명 중 지명 또는 단어만 입력 후 검색하면 용이
- 공고게시일자 및 개찰일자
 - 공고게시일자 : 공고 게시한 날짜를 기준으로 조회
 - 개찰일자 : 개찰 날짜를 기준으로 조회
- 참조번호 및 입찰공고번호
 - 내용을 아는 경우는 선택적으로 검색 가능
 - ※ 입찰일자를 아는 경우는 개찰일자를 조정하여 검색

○ 공고서 보는 방법(검색 후 과정)

- 우측에 『투찰』 부분이 보이는 것은 전자입찰이며, 그 외는 수기입찰임
- 공고내용을 보려면 「공고번호-차수」의 공고번호를 클릭
 - 공고일반의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여 참여 대상인가를 결정하여야 함
 - 공고서, 규격서등을 참고하고, 해당 공고내용에 관한 질문사항을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마감일시
 - 입찰참가자격등록이 입찰일 전일까지 되어 있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므로 미등록시에는 결과적으로 마감시간이 전일로 결정되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 공고서의 『협정』 클릭
 - 대표업체코드 검색 클릭하여 사업자번호로 검색하여 선택
 - 입찰기관에서 공고시 공동 또는 분담방식 중 한가지인 경우는 자동 반영되며, 두가지 경우는 선택하도록 되어 있음
 - 「공동수급체 및 구성원」의 대표업체구분은 자동 선택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는 출자비율을 입력하시고, 분담이행방식일 경우는 공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업체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홈페이지 ⇒ 조달업체업무(우측상단) ⇒ 물품시설용역 ⇒ 투찰관리(좌측)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좌측)에서 해당공고번호 입력하여 맞으면 승인처리

▲ 사전 규격(수요기관 요청서 공개)

○입찰공고가 되기 이전에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사전 규격이 공고가 되므로 규격에 대한 이의신청등이 있을 경우는 규격 담당자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조달청 입찰공고시 입찰일(5~3일전)에 예비가격기초금액을 발표하므로 반드시 확인 하신후 투찰에 참여바라며, 타 기관 공고시는 예비가격기초금액이 없는 경우가 많음
- 조달청 공고의 입찰투찰 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만 됨

▲ 개찰결과 및 최종낙찰자조회

○개찰결과 : 입찰 후 개찰된 결과를 보여줌
○최종낙찰자 조회 : 낙찰된 업체를 보여줌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 주요사항 안내

▲ e-고객센터(우측상단)

○법령정보 : 회계예규 및 조달청훈령 등 입찰에 필요한 규정

○공지사항

- 운영자 공지사항 : 전자입찰에 필요정보
- 기관별 공지사항 : 각 기관에서 업체에게 필요한 정보

○자료실

- 업무별자료실 : 업무에 관련된 사항
- 일반자료실 : 일반적인 주요 질문사항 등록

○FAQ, Q&A : 시스템관련 각종 질문사항 및 업체필요 정보

▲ 이용가이드(우측상단)

○이용자 매뉴얼

- 입찰에 필요한 각종 자료

각종 전자입찰관련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 국번없이 1588- 0800

신규 업체등록(=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

<1단계> 사업자용 범용 인증서(유료) 발급 [업체 직접 신청 및 발급]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직접 선택하여 연락 후 사업자용 범용 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선택한 서류제출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며,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해야 함>

☞ 한국전자인증 (www.crosscert.com)	: 1566-0566
☞ 한국정보인증 (www.signgate.com)	: 1577-8787
☞ 코스콤 (www.signkorea.com)	: 1577-7337
☞ 한국무역정보통신 (www.tradesign.net)	: 1566-2119

* 『지문보안토크』 구매 안내

경쟁입찰은 원칙적으로 ‘지문등록’을 해야하므로, <1단계> 범용 인증서를 구매할 때 미리 지문보안토크까지 동시에 구매(대금결제)하시기 바라며, 대금결제 후에 지문보안토크 수령증을 출력하여 우선 보관

(※ 지문보안토크 수령증은 아래 <3단계> 등록승인 완료된 후 조달청에 방문하여 <4단계> 지문등록 시에 제출해야 함)

<2단계>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업체 → 조달청 송신]→

- [나라장터(www.g2b.go.kr) 우측상단 ⇒ 신규이용자등록 ⇒ ③조달업체이용자 (→등록)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메뉴에서 해당 신청항목을 입력한 후 ‘송신’ (가장 가까운 조달청을 선택하여 송신) ⇒ [‘시행문 출력’] 클릭하여 출력 ⇒ 등록신청 관련 제출서류(*시행문 내용참조)를 해당 조달청(고객지원센터)에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제조물 품’ 등록을 신청 할 경우, 반드시 ‘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 여부를 중소기업중앙회(1666-9988)에 확인 후 신청)

<3단계> 입찰참가자격 등록승인 [조달청(고객지원센터)] (개인은 1인1사만 등록가능)

- 등록신청한 관할 조달청(고객지원센터)에서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를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즉시 승인함
* 승인여부 확인 메뉴 [나라장터 ⇒ 신규이용자등록 ⇒ ③조달업체이용자 (→등록)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출력’]

<4단계> 지문등록 [업체 → 조달청(고객지원센터) 직접 방문]

- 등록승인 여부를 확인 [나라장터 ⇒ 신규이용자등록 ⇒ ③조달업체이용자 (→등록)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출력’]하여 승인완료되었으면 조달청에 직접 방문하여 지문등록을 해야 함
- 대표자(또는 등록된 입찰대리인) 지문등록 방문 시 필수 지참서류 (①, ②)

①지문보안토크 수령증 ② 신분증 (각자 필히 지참)

※ 단, 미등록 입찰대리인의 경우 (나라장터에 먼저 입찰대리인 등록 후 지문등록 가능)

* 미등록 입찰대리인 제출서류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출력’] 내용참조

<5단계> 인증서 등록 [업체 직접 등록]

- [나라장터 우측상단 ⇒ 신규이용자등록 ⇒ ③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 ⇒ ‘인증서 신규등록’] 메뉴클릭 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하여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완료
☞ 5단계까지 완료되면 모든 업체등록 절차가 끝난 것이므로 다음날부터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 **나라장터 입력 등 이용방법 문의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 시행 행정예고

2023년 제4차 여수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통해 신규 지정된 여수시 주정차 금지구역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시행에 관한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31일

여 수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 시행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가. 주정차 금지구역 신규 지정내용 및 단속시행일자

연번	위 치	구간	내 용	단속시행일자
1	여수시 화장동 795-1 (공영주차장 주변)	편측 90M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황색복선)	2024. 2. 21.

※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 단속과는 별도 운영

나. 세부장소 : **【붙임 1】** 참고

2.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예고(공고)기간 : 2024. 1. 31.(수) ~ 2. 20.(화), 21일간
4. 예고(공고)방법 : 여수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 제출기한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수시 주차차량과(☎ 061-659-416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CCTV 설치 위치,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나. 제출기한 : 2024. 1. 31.(수) ~ 2. 21.(화), 21일간

다. 제출처 : 여수시 주차차량과 주차지도팀

라. 제출양식 : **【붙임 2】** 참고

마.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우편, 팩스

- 방문/우편 : 여수시 도원로 279, 3층 주차차량과(학동) (우)59673
- 팩스 : 061-659-5864 ※ 전송 후 수신여부 확인 전화 요망

바. 문의사항 : 여수시 주차차량과 주차지도팀(☎061-659-4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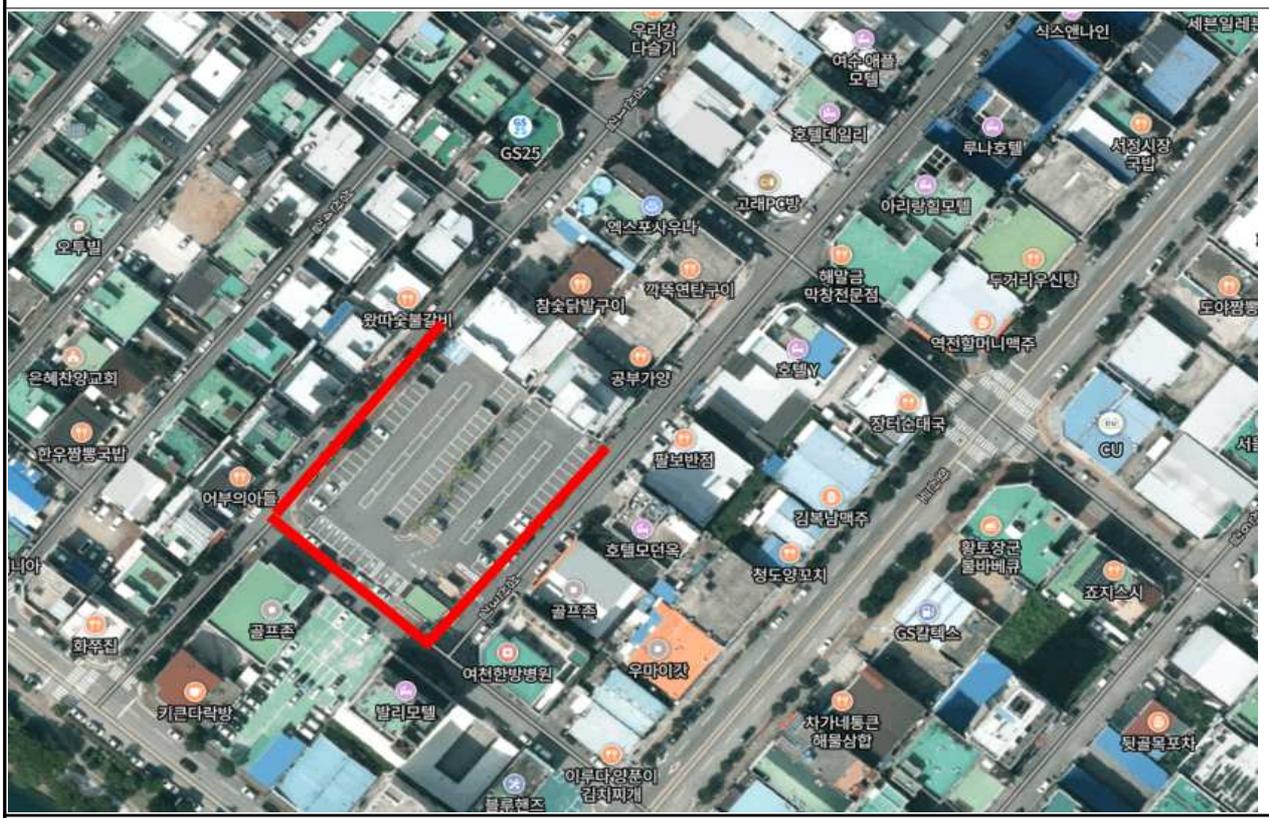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붙임 1. 주정차 금지구역 신규 지정 및 단속 예정 구간 위치도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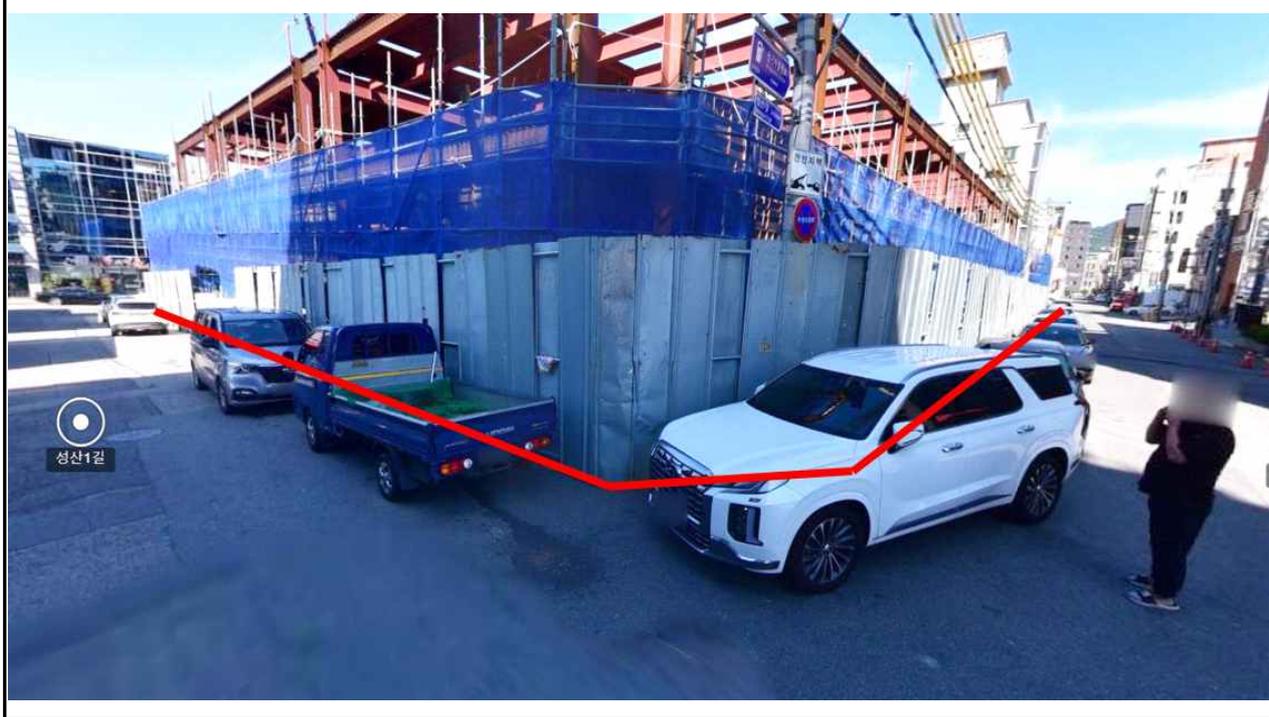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① 여주시 화장동 795-1 공영주차장 주변둘레 374m

위 치 도



현 장 사 진



「소라면 죽림행정복합시설 신축사업」 건축설계 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제5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 1

1. 공모개요

- 가. 공 모 명 : 소라면 죽림행정복합시설 신축사업 건축설계 공모
- 나. 위 치 : 전남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1170
- 다. 대지면적 : 1,036㎡
- 라.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청사
- 마. 건립규모 : 지하1층 ~ 지상4층, 연면적 1,925㎡(+5% 범위 내 조정 가능)
- 바. 주 용 도 : 공공업무시설
- 사. 예정공사비 : 7,50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아. 설계용역비 : 345,920천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건축, 구조, 토목, 기계, 조경, 전기, 통신, 소방 및 인테리어, 설계 예비인증 (제로에너지, B/F, 각종 예비인증) 취득, 건축허가, 건축심의, 설계자문, 계약심사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신청 및 보고자료 등에 관한 용역이 포함된 사항임.(인증 관련, 건립 규모에 따라 미 집행된 용역비는 추후 감액)

※ 본 설계비는 계약 시 조정될 수 있음.

- 사. 설계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간(공휴일 포함)

※ 위 기간은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종 심의, 협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

아. 용역범위 : 건축(구조), 기계설비,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소방 등 포함한 계획, 중간 및 실시설계, 준공도서 검수와 승인, 관계법령 검토 및 인허가 행정 절차 이행(준공 시 까지) 등을 포함

※ 설계내용의 기본과업 및 세부내용은 공모지침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2. 설계공모 방법 : 일반설계공모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2023.3.30.)에 따라 ‘일반설계공모’ 운영방법에 근거하여 시행함.

3. 응모(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 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자, 회사(업체)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 응모 가능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함. 단,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 건축사 취득 자격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 수행계약을 한 자이어야 함.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로 선임할 것)

나. 공동으로 응모하는 경우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가능)

- 1) 공동으로 응모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응모 참여업체는 “가” 항 참가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
- 2) 공동으로 응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자 중 최상위 비율을 가진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사사무소 내 공동대표일 경우에도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함. 다만, 공동응모 시 2개사를 초과할 수 없음.
- 3)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름.

- 4) 대표자는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됨.
 - 5) 공동으로 응모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응모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신청시 제출하여야 함.
- ※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 시 전기, 소방, 통신 설계 등 설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전력기술법관리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 각 분야별 해당 법령에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함.

다. 자격제한

-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제안공모에 응모할 수 없음.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함.
- 2) 본 건축설계 제안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 자격을 박탈함.
- 3) 심사위원, 기술위원 혹은 그가 속한 업체 및 직원 등은 참가할 수 없으며 기본계획용역 및 설계관리용역에 참가한 연구진과 연구진이 속한 건축사사무소는 참가할 수 없음.
- 4) 응모신청서를 접수하고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에 한하여 작품제출 권한이 있음.(공동 응모인 경우 현장설명 참석은 응모업체 중 1개업체 이상이 참여한 경우 유효함)
- 5) 참가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응모작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된 응모작은 수정·보완할 수 없음.

4.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조건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5. 질의응답의 기간·절차 및 그 공개방법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6. 제출도서 등의 종류 및 규격, 작성기준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7. 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8. 설계공모의 단계 · 등록절차 및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설계공모 시행공고	2024. 2. 1.	· 홈페이지, 나라장터, 세움터 공고
참가 등록	2024. 2. 13. 14:00 ~ 16:00	· 방법 : 직접 방문접수(기타 접수방법 불가) · 주소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회계과(청사관리팀)
현장설명회	2024. 2. 14. 10:00 ~ 12:00	· 장소 :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1170 · 참석대상 :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
질의서 접수 및 심사위원 기피신청서	2024. 2. 15. 09:00 ~ 18:00	· 방법 : 질의서 양식에 의한 E-MAIL 접수 · 주소 : pjh5545@korea.kr
질의 회신	2024. 2. 20.	· 일괄 전자우편 통보
설계공모안 접수	2024. 5. 1. 09:00 ~ 16:00	· 장소 : 여수시청 회계과 · 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 · 대상 : 참가등록 업체에 한함
심사위원회 개최	2024. 5. 9.	· 추후 개별통지 · 여수시 일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심사결과 발표	2024. 5. 16.	· 여수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설계공모안 반환	심사결과 발표 후 7일 이내	· 반환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되지 않은 작품은 임의처분(입상작 제외)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 예정

9. 입상의 종류 및 그 권리 · 보상의 내용(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 포함)

가. 당선작 : 1점(건축설계권 부여-설계용역 낙찰자로 결정)

나. 입상작 : 4점 이내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1조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차등 지급

순위	기타 입상자 4인 경우	기타 입상자 3인 경우	기타 입상자 2인 경우	기타 입상자 1인 경우	비 고
2위	4/10	4/10	4/10	1/3	
3위	3/10	3/10	3/10		
4위	2/10	2/10			
5위	1/10				

※ 개별 통지 후 당선작을 제외한 입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모안의 작성 비용에 대한 보상 요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10. 실적 및 감점 기준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11. 공모 결과 공개방법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12. 기타사항

- 가. 제안공모에 대한 세부사항은 설계공모지침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응모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고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모자에게 있음.
- 나. 본 설계공모는 2개 업체 이상 응모하여야 하며,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모를 하거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적용할 수 있음.
- 다. 공모안 중 작품수준이 현저하게 미달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라.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기관과 응모자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 마. 본 공모와 관련하여 명시된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및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2023.03.30.)]에 따르며, 그 외 명기되지 않은 제반 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 바. 응모자는 설계공모에 참가 등록함으로써 이 지침서의 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사. 본 설계공모 참가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일체 지불하지 않음.
- 아.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의함.
- 자. 기타 사항은 여수시 회계과 청사관리팀 담당자(☎ 061-659-3223)에게 문의

보상계획 열람 공고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서교동 중앙교회~다락카페 소방도로 개설공사(4공구)』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실시하고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손실보상계획을 열람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2. 1.

여 수 시 장 (인)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교동 중앙교회~다락카페 소방도로 개설공사(4공구)
- 사업시행자 : 여수시장
- 사 업 규 모 : L=82.3m, B=8m (598m²)
- 사 업 기 간 : 2020. 3. 5. ~2024. 12. 31.

2. 열람공고기간 : 2024. 2. 1. ~ 2024. 2. 16.(15일간)

- #### 3.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여수시 게시관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우리 시 도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 여수시 홈페이지 주소 : www.yeosu.go.kr 게재

4. 보상시기 : 추후 감정평가 후 개별 통지

5.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보상은 현금보상이며, 보상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 후 보상금을 계좌 입금합니다.
- 보상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동법 제68조 제2항에 의거 시·도지사 및 소유자의 추천이 없을 경우 2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양식 및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

추천 감정평가업자 명 : 해당사항 없음

토지 소재지	당초 지번	편입면적 (m ²)	토지 소유자		소유자 확인	전화번호 (주택 또는 휴대폰)	비고
			주소	성명			

※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재결 신청 및 진행할 예정입니다.

6. 기타

-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하나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규정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열람결과 대상물건 또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도로과(☎061-659-4065)로 문의바랍니다.